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본청 “894명”을 “89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